

평택시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선계약후검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08.05.)

1. 건설위치

- ① 평택소사벌 A-6블럭 : 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60(죽백동 815)
- ② 평택소사벌 A-7블럭 :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13 (비전동 1030)
- ③ 평택고덕 A6블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232(고덕동, 평택고덕LH2단지)
- ④ 평택고덕 A57-1블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60 (고덕동, 평택고덕LH12단지)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 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0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산정시점에 조회된 것으로 적용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소득, 자산, 기간)을 완화하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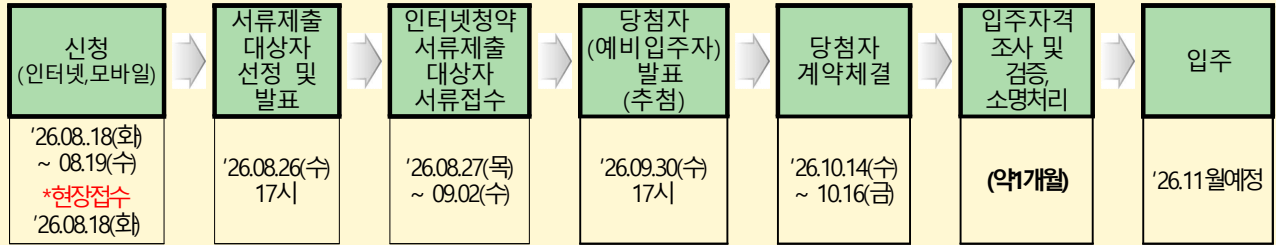
■ 입주자격완화 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구분	완화내용
소득 요건	소득요건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자산 요건	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일 것) *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간 요건	청년계층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완화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완화전 7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만 9세 이하 [완화전 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만 9세 이하 [완화전 만 6세 이하]

- 금회 공급주택은 최초 입주 후 미입주 또는 해약세대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先)계약 후(後)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주자격 검증 이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기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입주자격 부적격이 아닌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의 모집호수는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계약시점의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고,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주택형의 경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금회 당첨자(입주자)는 선(先)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최종 당첨 및 입주기간을 안내해 드리며, 그 외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완화기준 적용)**,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회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없이 재계약 허용됩니다. (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 **금회 공급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 학 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08.06.~2007.08.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이내인 사람** 또는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 만65세 이상의 사람(**1961.08.05. 이전 출생**)
 -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대행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기타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류 참조)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입주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격검증 후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개별통보합니다.

[선계약 후검증 유의사항]

-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 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며, 자격검증 적격 안내 후 잔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주택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 및 숙지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문자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입주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잔여예 비자수	금회모집호수 (900)		세대 당 계약면적(m²)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당첨자 (272)	예비자 (628)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평택 소사빌 A-6	20A	대학생/청년 주거급여수급자	200	0	24	46	20.59	9.8845	1.724	9.2483	41.4468	10, 2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0A1	고령자(주거약자용)	24	0	4	6	20.59	9.8845	1.724	9.2483	41.4468	20	
	22A	대학생/청년 주거급여수급자	72	1	0	20	22.59	10.8447	1.8915	10.1466	45.4728	10, 20	
	26A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67	3	4	26	26.44	12.6929	2.2139	11.8759	53.2227	10, 20	
	26A1	고령자(주거약자용)	15	0	0	5	26.44	12.6929	2.2139	11.8759	53.2227	20	
	36A/B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29	36	0	40	36.70	17.6184	3.073	16.4843	73.8757	10, 10~14	
36.42							17.484	3.0496	16.3586	73.3122			

단지명	주택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잔여예 비자수	금회모집호수 (900)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당첨자 (272)	예비자 (628)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평택 소사별 A-7	21A/AH	대학생/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20	0	5	35	21.9900	12.5073	3.5920	13.1519	51.2412	10, 2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6A/AH	대학생/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26	14	0	30	26.9800	15.3455	4.4071	16.1363	62.8689	10, 20	
	26BH	고령자(주거약자용)	28	0	4	11	26.9800	15.3455	4.4071	16.1363	62.8689	20	
	44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	1	0	20	44.6800	25.4128	7.2983	26.7224	104.1135	10, 10~14	
평택 고덕 A-6	16	대학생/청년 주거급여수급자	370	0	90	140	16.33	8.6097	1.0219	6.8652	32.8268	10, 2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36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36	54	0	50	36.26	19.1174	2.2694	15.2439	72.8907	10, 10~14	
평택 고덕 A57-1	26A	대학생청년	591	0	62	82	26.03	13.5614	2.5172	13.4991	55.6077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주거급여수급자		0	2	4	26.03	13.5614	2.5172	13.4991	55.6077	2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90	0	21	24	26.03	13.5614	2.5172	13.4991	55.6077	20	
	36A	청년	34	0	7	18	36.97	19.261	3.5752	19.1725	78.9787	10	
	44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85	1	49	71	44.12	22.9861	4.2666	22.8805	94.2532	10, 10~14	

-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누어 선정**되며, **계약시점의**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입주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하며 계약안내 및 계약체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약신청 시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였으나, 서류검토 및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평택소사별A-6)** 20형 및 22형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소형), 가스쿡탑(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평택소사별A-6)** 20A1, 26A1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평택소사별A-7)**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단, 21A/21AH형, 26A/26AH형 주택은 공급형을 통합하여 청약신청을 받아,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평택소사별A-7)** 26BH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평택소사별A-7)** 21A/21AH형의 주택에는 냉장고(장), 옷장, 책상이 설치됩니다. (타 평형 미설치)
- **(평택소사별A-7)**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사용이 불가합니다.

- (평택고덕A-6) 16형 주택에는 냉장고(소형), 책상, 가스쿡탑(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평택고덕A-6) 16형 주택의 경우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하며, 단지 내 공용세탁장을 이용해야 합니다.(팜플릿 참고)
- (평택고덕A-6) 36A형 4세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용으로 공급됩니다.
- (평택고덕A57-1) 26A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평택고덕A57-1) 26A형의 공급물량 중 청약미달인 계층의 물량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평택고덕A57-1) 26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평택고덕A57-1) 44A형 2세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용으로 공급되며 이에 따라 계약호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2-1.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 형태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원)	임대조건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평택 소사별 A-6	20A	대학생/ 청년(소득無)	18,360,000	918,000	17,442,000	87,210	(+)	5,000,000	23,360,000	62,210
							(-)	15,000,000	3,360,000	130,960
		청년(소득有)	19,440,000	972,000	18,468,000	92,340	(+)	6,000,000	25,440,000	62,340
							(-)	16,000,000	3,440,000	139,000
		주거급여수급자	16,200,000	810,000	15,390,000	76,950	(+)	3,000,000	19,200,000	61,950
							(-)	13,000,000	3,200,000	114,860
	20A1	고령자(주거약자용)	20,520,000	1,026,000	19,494,000	97,470	(+)	7,000,000	27,520,000	62,470
							(-)	16,000,000	4,520,000	144,130
	22A	대학생/ 청년(소득無)	20,060,000	1,003,000	19,057,000	95,280	(+)	7,000,000	27,060,000	60,280
							(-)	16,000,000	4,060,000	141,940
		청년(소득有)	21,240,000	1,062,000	20,178,000	100,890	(+)	8,000,000	29,240,000	60,890
							(-)	17,000,000	4,240,000	150,470
		주거급여수급자	17,700,000	885,000	16,815,000	84,070	(+)	4,000,000	21,700,000	64,070
							(-)	14,000,000	3,700,000	124,900
	26A	청년(소득無)	23,460,000	1,173,000	22,287,000	111,430	(+)	10,000,000	33,460,000	61,430
							(-)	19,000,000	4,460,000	166,840
		청년(소득有)	24,840,000	1,242,000	23,598,000	117,990	(+)	11,000,000	35,840,000	62,990
							(-)	20,000,000	4,840,000	176,320
		주거급여수급자	20,700,000	1,035,000	19,665,000	98,320	(+)	7,000,000	27,700,000	63,320
							(-)	17,000,000	3,700,000	147,900
	26A1	고령자(주거약자용)	26,220,000	1,311,000	24,909,000	124,540	(+)	12,000,000	38,220,000	64,540
							(-)	21,000,000	5,220,000	185,790
	36A/B	청년(소득無)	32,300,000	1,615,000	30,685,000	153,420	(+)	18,000,000	50,300,000	63,420
							(-)	26,000,000	6,300,000	229,250
		청년(소득有)	34,200,000	1,710,000	32,490,000	162,450	(+)	19,000,000	53,200,000	67,450
							(-)	28,000,000	6,200,000	244,1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8,000,000	1,900,000	36,100,000	180,500	(+)	21,000,000	59,000,000	75,500
							(-)	31,000,000	7,000,000	270,910
평택 소사별 A-7	21A/AH	대학생/ 청년(소득無)	24,820,000	1,241,000	23,579,000	117,890	(+)	11,000,000	35,820,000	62,890
							(-)	20,000,000	4,820,000	176,220
		청년(소득有)	26,280,000	1,314,000	24,966,000	124,830	(+)	12,000,000	38,280,000	64,830
							(-)	21,000,000	5,280,000	186,080
		주거급여수급자	21,900,000	1,095,000	20,805,000	104,020	(+)	8,000,000	29,900,000	64,020
							(-)	18,000,000	3,900,000	156,520

단지명	공급 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26A/AH	대학생/ 청년(소득無)	30,260,000	1,513,000	28,747,000	143,730	(+)	16,000,000	46,260,000	63,730	
							(-)	25,000,000	5,260,000	216,640	
		청년(소득有)	32,040,000	1,602,000	30,438,000	152,190	(+)	18,000,000	50,040,000	62,190	
							(-)	26,000,000	6,040,000	228,020	
		주거급여수급자	26,700,000	1,335,000	25,365,000	126,820	(+)	13,000,000	39,700,000	61,820	
							(-)	22,000,000	4,700,000	190,980	
	26BH	고령자(주거약자용)	33,820,000	1,691,000	32,129,000	160,640	(+)	19,000,000	52,820,000	65,640	
							(-)	28,000,000	5,820,000	242,300	
	44A	청년(소득無)	49,640,000	2,482,000	47,158,000	235,790	(+)	28,000,000	77,640,000	95,790	
							(-)	41,000,000	8,640,000	355,370	
		청년(소득有)	52,560,000	2,628,000	49,932,000	249,660	(+)	29,000,000	81,560,000	104,660	
							(-)	43,000,000	9,560,000	375,07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8,400,000	2,920,000	55,480,000	277,400	(+)	33,000,000	91,400,000	112,400	
							(-)	48,000,000	10,400,000	417,400	
평택 고덕 A-6	16	대학생/ 청년(소득無)	19,380,000	969,000	18,411,000	91,730	(+)	6,000,000	25,380,000	61,730	
							(-)	16,000,000	3,380,000	138,390	
		청년(소득有)	20,520,000	1,026,000	19,494,000	97,120	(+)	7,000,000	27,520,000	62,120	
							(-)	16,000,000	4,520,000	143,780	
		주거급여수급자	17,100,000	855,000	16,245,000	80,940	(+)	4,000,000	21,100,000	60,940	
							(-)	14,000,000	3,100,000	121,770	
	36A	청년(소득無)	41,140,000	2,057,000	39,083,000	194,720	(+)	23,000,000	64,140,000	79,720	
							(-)	34,000,000	7,140,000	293,880	
		청년(소득有)	43,560,000	2,178,000	41,382,000	206,180	(+)	24,000,000	67,560,000	86,180	
							(-)	36,000,000	7,560,000	311,18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8,400,000	2,420,000	45,980,000	229,090	(+)	27,000,000	75,400,000	94,090	
							(-)	40,000,000	8,400,000	345,750	
	평택 고덕 A57-1	26A	대학생/ 청년(소득無)	30,940,000	1,547,000	29,393,000	146,960	(+)	17,000,000	47,940,000	61,960
								(-)	25,000,000	5,940,000	219,870
청년(소득有)			32,760,000	1,638,000	31,122,000	155,610	(+)	18,000,000	50,760,000	65,610	
							(-)	27,000,000	5,760,000	234,360	
주거급여수급자			27,300,000	1,365,000	25,935,000	129,670	(+)	13,000,000	40,300,000	64,670	
							(-)	22,000,000	5,300,000	193,83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34,580,000	1,729,000	32,851,000	164,250	(+)	19,000,000	53,580,000	69,250	
							(-)	28,000,000	6,580,000	245,910	
36A		청년(소득無)	43,520,000	2,176,000	41,344,000	206,720	(+)	24,000,000	67,520,000	86,720	
							(-)	36,000,000	7,520,000	311,720	
		청년(소득有)	46,080,000	2,304,000	43,776,000	218,880	(+)	26,000,000	72,080,000	88,880	
							(-)	38,000,000	8,080,000	329,710	
44A		청년(소득無)	51,680,000	2,584,000	49,096,000	245,480	(+)	29,000,000	80,680,000	100,480	
							(-)	42,000,000	9,680,000	367,980	
	청년(소득有)	54,720,000	2,736,000	51,984,000	259,920	(+)	31,000,000	85,720,000	104,920		
						(-)	45,000,000	9,720,000	391,17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0,800,000	3,040,000	57,760,000	288,800	(+)	34,000,000	94,800,000	118,800		
						(-)	50,000,000	10,800,000	434,63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 검증후 입주가능시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대학생 계층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 동일한 순위 내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소사별A-6블럭 20A형 및 22A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소사별A-7블럭 21A/AH형, 26A/AH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고덕A-6블럭 16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고덕A57-1블럭 26A형의 "대학생", "청년"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㉔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08.06.~2007.08.05)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고일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해당 세대의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현재 직장에서만 근무한 기간이 아닌, 이전부터 소득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 프리랜서, 자영업 등 위 서류를 통해 소득업무 종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사기간 증빙에 대한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 동일한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소사별A-6블럭 20A형 및 22A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26A형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36A/B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소사별A-7블럭 21A/AH형, 26A/AH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44A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고덕A-6블럭 16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36A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고덕A57-1블럭 26A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44A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㉞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㉞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㉞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㉞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완화조건】 10년 이내 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①-㉞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㉞ (한부모가족)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③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 (단, 해당 세대의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모집대상 주택을 각각 신청시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에 따라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 동일한 순위 내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소사별A-6블럭 36A/B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소사별A-7블럭 44A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고덕A-6블럭 36A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고덕A57-1블럭 44A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①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②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해당 세대의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동일한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동일한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소사별A-6블럭 20A형 및 22A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26A형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소사별A-7블럭 21A/AH형, 26A/AH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고덕A-6블럭 16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고덕A57-1블럭 44A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26.08.18(화) 10:00 ~'26.08.19(수) 17: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현장대행접수 > '26.08.18(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LH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 (고령자등 정보취약계층)	'26.08.26(수) 17: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6.08.27.(목)~09.02(수) ※ 등기우편 발송장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 사 ※ 2026.09.02(수)일자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함	'26.09.30.(수)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ARS(1661-7700)게시	'26.10.14.(수) ~10.16.(금) *전자계약: 10~16시 *현장계약: 10~16시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6.08.27.(목)~9.02.(수)]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됩니다.**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ARS(1661-7700)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및 현장 청약대행접수 청약자에 한하며,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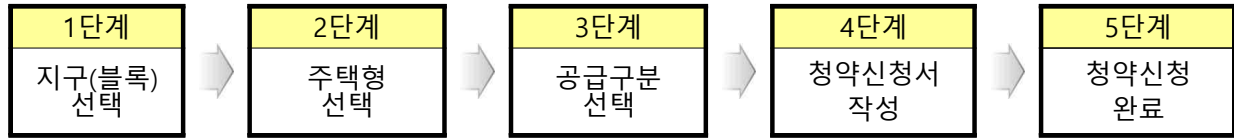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08.18.(화) 10:00시부터 '26.08.19.(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08.18.(화) 10:00시부터 '26.08.19.(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함)

- 현장방문 접수기간 : **2026.08.18(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방문 신청장소 :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현장의 청약대행 접수는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와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신청서류 참조)
 - 접수현장에서 어떤 단지, 어떤 유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의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6.08.26(수)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26.08.27(목)~09.02(수)**]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인 **2026.09.02(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등기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앞 (우편번호 17783, 봉투 겉면에 "**신청단지, 주택형, 이름, 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기재)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현장방문 신청자는 접수시점에 제출	1통 (별첨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첨2)
입주자격 완화 및 선계약후검증 약약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첨3, 별첨4)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필수]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1통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 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세대원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학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 <u>전체이력</u> '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u>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u> '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 <u>전체이력</u> '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u>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u>)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u>전체이력</u>'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u>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u>)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u>전체이력</u>'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u>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u>)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 ※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시 입주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맞벌이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맞벌이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층	제출	※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미제출시 입주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자) 발표 : 2026.09.30.(수) 17:00 이후

- 당첨 여부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년계층의 경우 계약시 임대조건은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 검토 내용으로 계약진행되나 추후 자격검증 결과 소득 결과(소득유)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모집은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안내 되며,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주택형의 경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1600-1004)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 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되며, 입주여부는 키 수령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서면등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재 후 송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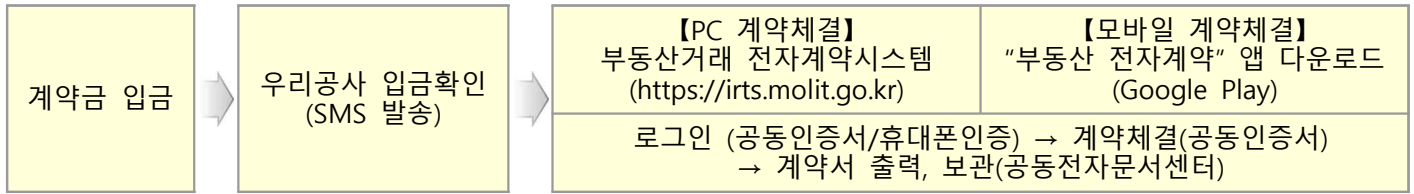
■ 당첨자 계약안내 : 추후 개별 통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전자계약] : '26.10.14(수) 10:00 ~ '26.10.16(금) 16:00

- 계약금 납부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내에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	부 동 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산	산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지방세정 자료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	■ 입주 자격 완화 내용 <table><tr><th>항목</th><th>내용</th></tr><tr><td>소득요건</td><td>소득요건 배제</td></tr><tr><td>자산요건</td><td>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td></tr><tr><td rowspan="3">기간요건 완화</td><td>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td></tr><tr><td>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시 혼인기간 기본 : 7년 이내 → 완화 :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td></tr><tr><td>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 시 자녀의 연령 기본 : 만 6세 이하 → 완화 : 만 9세 이하</td></tr></table>	항목	내용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간요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시 혼인기간 기본 : 7년 이내 → 완화 :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 시 자녀의 연령 기본 : 만 6세 이하 → 완화 : 만 9세 이하
	항목	내용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간요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시 혼인기간 기본 : 7년 이내 → 완화 :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 시 자녀의 연령 기본 : 만 6세 이하 → 완화 : 만 9세 이하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완화(소득 및 총자산 배제) 요건으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단,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는 완화조건에 따라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임시로 열쇠 불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거행복지원센터(구 관리사무소)가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는 열쇠 불출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 소사 별 A-6 지구 및 단지 특성	■ 일반사항 •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에 인접한 블록(S-1, S-2)이 건설공사 중으로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도시지원시설이, 서측에는 초등학교(개교 미정)가, 남측에는 아파트단지가, 동측에는 도시기반시설인 완충녹지가 각각 위치하며, 동측 지구 외에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개설 예정(시기 미정)입니다.
- 단지 서측에 초등학교 부지는 계획되어 있으나 학교 설립 시기 등에 관한 세부 일정은 평택교육지원청의 소관 사항입니다.
-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가내초등학교에, 중학생은 기존 평택중학군[비전중, 세교중, 신한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용이중(개교 예정)]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나, 평택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단지에 입주하는 고등학생은 비전고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나 평택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평택시 전역에 진학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아파트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내.외부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방문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급수, 급탕, 난방에 대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세대내 화장실에는 별도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 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대수는 지상 290대, 지하 382대, 상가지상3대로 총 675대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 합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된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세대는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차량 차단기 소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단지는 주차 차단기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 501동 및 502동은 주민 편의시설이 배치되는 특성상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태양열 집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502동 옥탑에는 TV공청설비 안테나가 설치됩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위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단지 외곽 담장은 생울타리 담장으로 시공되며, 방음웬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지하주차장 502동 웬룸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1m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동등이상의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타입별 마감재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우수드레인 등이 시공되며 이로 인하여 유수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외부에 설치공간이 제공되며 창호를 통한 소음 및 열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후면 및 바닥면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공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평택 소사 별 A-7	지구 및 단지 특성	□ 지구 내 · 외부 여건 - 평택소사별지구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0호)로 준공완료되었으며, 향후 지구 내 장기 미매각 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사별지구 동측으로는 경부고속국도, 북측으로는 평택-안성간 고속국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소사별지구 내 서측에 수질복원센터(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 및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구 분</th><th>위 치</th><th>시설종류</th><th>시설용량</th></tr><tr><td>평택소사별 수질복원센터</td><td>비전동 1000</td><td>공공하수처리시설</td><td>22천m³/일</td></tr></table> - 평택소사별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시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묘지, 협오시설, 저류시설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사이버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역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는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관할부서로 인계 완료된 사업지구로 지구 내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 발생시 평택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용지는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43m 도로, 북측에는 12m 도로 및 동측에는 27m 도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도로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위 치	시설종류	시설용량	평택소사별 수질복원센터	비전동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22천m ³ /일
구 분	위 치	시설종류	시설용량							
평택소사별 수질복원센터	비전동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22천m ³ /일							

- 단지 서측의 종교시설과 인접하여 있으며 단지 북측의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서 종교시설이용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사별 A-7BL은 각 세대내 전기국탑이 기본제공되며 일체의 가스공급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가스를 이용하는 장치(건조기, 오븐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평택시와 LH의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단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며, 지역편의시설과 함께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단지내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동(지역편의시설) 북측 단지내도로는 공공보행로로서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포함한 일체의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소사별 A-7BL은 입주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동출입구 무단차 계획을 적용하여 1층세대 바닥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약30cm 높이며 저층세대는 사생활침해 등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용검사 후 평택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후 기타공용면적 변동이 있습니다.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

- 인접건물 및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주방배기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및 비상시 가동으로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위치 : 101동 7·8호세대)
- 단지 주변에 차량도로가 있으며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 및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 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열기·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환기탑,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가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며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기기 가동 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생활폐기물 분리시설, 주동진입 경사로

-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 상 동별로 주차 대수가 상이하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일부구간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전용 주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로 차량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택배차량 등은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의 주차가능대수는 280대입니다.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 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보관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팸플릿 단지배치도 참조)

[단지공통 유의사항]

- 출입구에 차양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차양의 재질에 따라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및 이사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사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주의 요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마감자재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장치)는 지상주차장 램프 부근에 설치되며 전파수신 상태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무궁화 위성안테나 지상파 방송안테나는 101동 옥상층에 설치하며 2차 전파조사 시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 및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립식 욕실이 설치되며 욕실문 개폐 시 내·외부 압력차에 의해 천장점검구의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에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상하부장 후면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벽/바닥타일 등은 실제 시공 및 생산과정에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스테이플 건(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입면 특화에 따라 각 평형의 창문 위치, 발코니 위치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루버는 수동으로 작동되며, 계절에 따라 입주자가 직접 개폐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샷시의 개폐방향은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창문이 가려지거나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설치를 위한 슬리브가 실외기실 벽체(상,하 2개소)에 설치 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동배기방식을 적용 합니다.
- 발코니에는 배수용드레인이 설치되고, 에어컨 실외기실은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으며 에어컨배수용 드레인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으니, 한파가 지속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에는 세탁용 온수(1구형), 냉수(2구형) 수도꼭지가 설치되며, 냉수(2구형) 수도꼭지 중 1구는 화초물주기 겸용입니다.

		• 지하층 승강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실외기실에 환기유닛 및 플렉시블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장치의 전열교환기는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를 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주방에 21㎡, 26㎡ 타입은 2구형, 44㎡ 타입은 3구형 전기쿡탑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가스 배관 설치의 별도로 없으므로 가스쿡탑 등 가스설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 전기쿡탑 사용 시 전용 주방기구(냄비, 프라이팬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1㎡타입 세대 주방에는 빌트인 냉장고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제품 교체 또는 변경 설치가 불가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자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도 PD에 각 세대용 원격검침 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열량계가 설치됩니다.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레인형 샤워기로 샤워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태양광은 각 동별로 설치되며, 용량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책자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면의 환기구 및 창호 개폐가능 여부 등의 세부적인 표기는 생략되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관련 등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 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사벌 A-7블록 행복주택의 입주 예정 초등학생은 자란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은 평택중학군 내 중학교(비전중, 세교중, 용이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신한중, 동삭중, 배다리중)로 배치될 예정이며, 신입생의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되므로, 배정 일정 및 방법, 배치 계획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평택 고덕 A-6	지구 및 단지 특성	■ 지구여건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발단계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이 지구 내 입지하고 있으며, 통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협의 중에 있으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입주 시 군사시설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군사시설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 이전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공동주택 입주 시 보일 수 있으며, 군사시설 이전 전까지 일부 도시계획도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 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학교(유치원 포함)설립 시기는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개교일정 등은 사전에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주민센터, 경찰파출소, 소방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평택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경사로 및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측에 오산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동측 경계부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있어 철도시설이 보이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평택시 등 관계기관의 하천정비계획 변경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입점 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 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악취 및 수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남서측 유보지 등에 철탑이 존치되어 있으며, 지중화 과정에서 유보지 구간에 임시철탑(C/H)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며, 추후 모든 철탑(C/H 포함)은 지중화 공사 완료시 철거될 예정입니다.
- 국제교류단지 등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국제교류단지)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 진행지구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30.5m 도로 및 20m 연결녹지가 지구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은 40m 도로 및 17m 연결녹지와 인접하고 동측은 22m 도로와 인접합니다.
- 단지 남측에 12m 보행자도로와 인접합니다.
- 단지진입로는 주출입구는 40m 도로 및 17m 녹지와 접해 있고 부출입구는 25m 도로와 인접해 있어 도로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서정리 역세권 등)은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과 연결하여 동측에는 업무 및 상업용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인접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고가도로 및 서정리역 주변 전철 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A-5블록, 서측에 A-15블록, 남측에 A-7블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필지 주변 구간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구간으로 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당해 필지 건축공사 준공 시까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필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필지 인근에 계획된 단독주택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불빛, 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필지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건축물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필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공동주택 인근의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부족, 공사차량 통행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지역난방공사에서 임시시설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으로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건설공사 완료까지 임시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특화계획인 국제교류단지 계획 등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나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 가까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주차장(지상)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의 단지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주변 205, 206동 인근동(동)은 발전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일부구간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및 차로 높이는 2.3m(주차공간 2.1m)이고 주차가능수는 1,123대입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및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트렌치 내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주동진입 경사로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과 일부 지상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환룸과 환룸 상부의 환기탑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이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경로당, 지역편의시설(작은도서관, 주민카페, 청년 카페, 실내체육관, 공용세탁장,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비실 등이며, 내부시설물은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경우 신발장, 주방가구가 설치되고, 경비실은 주방가구가 설치됩니다.
- 204동 1층(101~104호)은 사회적기업 공간입니다.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주민카페, 청년카페, 경로당은 별도 부대시설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소음 발생에 따라 시설 내부의 기타시설 및 시설외부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구분합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층 복도난간 상부에 복도외부창호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저층세대는 일부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 및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있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202동 옥상에 안테나(UHD,DMB,FM,OBS) 및 무궁화위성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모듈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모듈의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전 특고압 PAD/SW 설치로 인접 일부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며 급속충전기 1개, 완속충전기 5개가 설치되며 이동식충전기 16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투시도, 배치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뀌거나 성능향상을

-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고,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팜플릿 상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면의 환기구 등의 세부적인 표기는 생략되었습니다.
 - 각 평형별로 현관의 신발장 설치 개소 및 규격은 상이합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포함)의 바닥 및 벽체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바닥타일 등은 실제 시공 및 생산과정에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내시경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시스템욕실로 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 급수급탕 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거실 및 각 침실에는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세탁용(화초물주기용 겸용) 수도꼭지가 설치됩니다.(16형은 세탁용 수도꼭지 미설치)
 - **16형 세대의 경우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하며, 단지 내 공용세탁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26형, 36형의 경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배치를 위한 냉장고장이 별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 16형, 21형 세대의 경우 반침장 및 책장이 고정되어 있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물건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환기용 유닛 및 덕트가 실외기실 천장에 시공되고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 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의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3층의 주거약자세대에는 자석감지기(현관방화문), 동작감지기(입구 천정), 비상콜전화(화장실 변기옆(26형, 36형), 각방 스위치 아래(36형)) 설치됩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시설의 전원 및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

- 지구 내 초·중·고 총 2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인근 종덕초가 과밀학급이 예상되어 배치하기가 어려우며 해당 관청에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내 실제 발생 학생 수를 파악하여 학생 규모에 따라 종덕초 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생 발생이 많을 경우 원거리 초등학교로 배치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생은 송탄중학군 내 7개 중학교(장당중, 이충중, 송탄중, 은혜중, 태광중, 라온중, 효명중)로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택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생은 개발지구 인근 21개교(효명고, 이충고, 태광고, 라온고, 송탄고, 은혜고 등)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학구역·신설학교 개교시기 및 설립계획·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처리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 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청약·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및 주변 개발계획, 단지여건 등은 청약신청·계약체결 전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가능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상주차장,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주변 건설현장으로 인하여 소음 등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고가도로 및 3면도로, 서정리역 주변 전철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위치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 205, 206동 옥상층에 옥외 안테나, 지하 환룸(#4, #6) 2개소에 중계장치가 설치되며, 현장여건(전파 수신상태 등)에 따라 안테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택 고덕 A57- 1	지구 및 단지 특성	■ 일반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 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청약·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의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상주차장,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 시설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및 3면도로, 북측 근린상업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세대에는 가스공급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위치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 1201동, 1202동, 1205동 지붕층과 1202동, 1205동 지하헬름 2개소에 안테나와 중계장치가 설치되며, 현장 여건(수신상태 등)에 따라 안테나와 중계장치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16.5m도로 및 근린상업시설이 단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은 아파트단지, 동측은 연결녹지와 30.5m 도로에 인접합니다.
- 단지 남측에 22m 도로와 인접합니다.
- 단지진입로는 주출입구와 보행출입구가 남측 22m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주방 공용배기팬과 욕실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03동 복도 전면에는 지하저수조실 환기탑이 시공되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PD에 주방 공용배기용 입상배관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세대에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연결녹지(동측),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인해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나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로 보관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보관소는 1201, 1202, 1204, 1205동 지하에 위치합니다.
- 본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주차장(지상)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주출입구 1개소가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주변 1205동 인근(동)은 발전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일부구간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과 일부 지상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02동 옥탑 지붕층에는 위성 및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위한 안테나가 설치 됩니다.
- CCTV는 단지내 주출입구,보행자출입구,옥외놀이터,지하주차장,각동 출입구, 각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되며, 아파트 1층, 최상층 등의 일부 카메라는 세대현관문 출입이 감시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및 차로 높이는 2.3m(주차공간 높이는 2.1m)이며 단지 주차가능대수는 633대 입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진출입 및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를 위한 트랜치가 설치되며, 트랜치 내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주동진입 경사로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휀룸과 휀룸 상부의 환기탑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이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경로당, 지역편의시설(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공용부엌, 피트니스센터, 공용세탁장), 어린이집, 경비실 등이며, 내부시설물은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경우 신발장, 주방가구가 설치되고, 경비실은 주방가구만 설치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가구, 인테리어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품목은 아닙니다.
- 1201동 1층(12~17호)은 주민공동시설로 사회적기업, 공유형오피스 등의 공간입니다.
- 어린이집은 별도 부대시설 건물로 그 외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1층과 상가동 2층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여건 상 통학차량의 임시주차공간과 회차공간이 없어 방문자 출입구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부대복리시설 등 외부에 시스템에어컨용 실외기 설치로 일부세대(인접동 저층부)에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소음 발생에 따라 시설 내부의 기타시설 및 시설외부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구분합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종 복도난간 상부에 복도외부창호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동 전면 및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있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샐러,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안내책자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면의 환기구 등의 세부적인 표기는 생략되었습니다.
- 각 평형별로 현관의 신발장 설치 개소 및 규격은 상이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의 바닥 및 벽체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바닥타일 등은 실제 시공 및 생산과정에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내시경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에 시스템욕실이 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에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배치를 위한 냉장고장이 별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거실 및 각 침실에는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외부창호 하부에 안전유리(접합유리) 고정창이 설치되며, 유리재질은 안전성능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코니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세탁용, 화초물주기용 수도꼭지가 설치됩니다.
- 세대전면에 설치되는 실외기실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실외기 외 물건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 1201동 14호~17호 라인 복도 창호는 세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하부 불투명유리 프로젝트 (박여단)창 및 상부 투명유리 고정창이 설치되어 환기나 채광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201동 10,11호, 1202동 1,4~7호, 1205동 8호~11호 라인 복도 창호는 세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투명유리 미서기창 및 고정창이 설치되어 환기나 채광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에 면한 침실 이중창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내부 일면에 불투명유리가 시공됩니다. •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 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배관관통용 슬리브만 시공됩니다. • 1201, 1202, 1205동 측벽세대 발코니와 실외기실에 비상 탈출용 완강기(3~10층)가 설치되어 물건 적재 및 설치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1종 환기(급·배기) 유닛이 설치되며, 가동시 각 침실별 디퓨저를 통하여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가열방식의 하이라이트 전기쿡탑이 설치되어 전용 용기는 불필요 하나, 용기 재질 및 사이즈에 따라 화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지구(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평택소사별 A-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주) 화산건설(주)	-	-
평택소사별 A-7	한국토지주택공사	남광토건(주)	-	(주)건축사사무소 광장 외 4개사
평택고덕 A-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기업(주) 외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주)건축사사무소건원 엔지니어링 외 4개사
평택고덕 A57-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KCC건설 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외 3개사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평택소사별A-6블럭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구분	구분	설치항목
평택소사별 A-6	현관	안전손잡이
	욕실	안전손잡이, 밖여단이 욕실문, 위아래 이동가능한 샤워기, 비상콜, 욕실입구 벽 하부 야간 센서등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단이→밖여단)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주방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거실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침실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신청단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기 입주단지 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조립식 욕실(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본 행복주택은 계약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도로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신한헤스티아 아트타워 2층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05.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